조계종 종정 신년하례 최소규모 봉행

1월 12일 법회나 인사말 없어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위촉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불기2565년 신축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규모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12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불기2565(2021)년 신축년 종정예하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로의장 수봉 세민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불교의 전통인 '통알'로 신년인사를 올린데 이어 별도의 법어나 인사말 없이 종정예하의 덕담을 듣고 나누는 등 간소한 방식으로 하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례에 이어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신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무관 스님은 지난해 11월 56차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전계대화상에 추천됐으며, 현재 법계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조계종이 매년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봉행했던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은 연기하고 이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봉행키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선암사 소유권 논란 재점화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 소송'서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
조계종, 1월 13일 불복 입장문내
등기권자·점유자간 소유권 쟁점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제공=문화재청

최근 대법원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조계종 소유를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조계종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1월 13일 '선암사 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법에 의해 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권한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해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사찰은 역사적으로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돼 왔고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돼 왔다"며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불교계는 해방 이후 독신 비구승들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화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로부터 현재의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암사의 경우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을 임명한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조계종의 지속적인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태고종이 선암사에 거주하며 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에 저항해 왔기 때문에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 공사'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다. "순천시가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건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음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조계종의 주장이다.

이어 조계종은 광주지방법원에 대해 "조계종은 한국불교 전통을 보존하면서 정체성을 지켜온 유일한 계승자인 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아왔던 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올곧이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광주시, 나눔의집 임시이사 파견 추진 '논란'

1월 6일 이사 8명 추천 의뢰
'혐의없음'수사종결에도 강행
나눔의집, "부당처분 법대응"

경기도 광주시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이 나눔의집 이사들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음에도,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교체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1월 6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나눔의집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가 해임을 명령한 이사 5명과 지난해 10월 무효처분이 내려진 사외이사 3명이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임처분 2개월 이내인 2월 17일까지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이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 이사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광주시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눔의집 측은 "경기도 해임명령은 부당한 처분으로, 광주시의 임시이사 파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태정 법률대리인은 "이미 광주시과 경기도청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선했고, 이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역시 혐의없음으로 나온 상황에서 해임명령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유골반환문제 관심 당부

1월 14일 강창일 주일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가 추진하는 유골반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와 유골반환 문제를 위한 협의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일 주일대사는 "유골반환은 어느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일본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 내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골봉환문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회당학원 신임 이사장에 상명 정사

1월 13일 이사회서 선출



진각종 회당학원 제27대 이사장에 상명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1월 1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27대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에 대구 선륜심인당 주교인 상명 정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21일까지다.

상명 정사는 진기 52(1998)년 울릉도 총지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정정·능인·안산·방등·지륜심인당 주교와 부산교구 종무국장, 통리원 기획국장, 진각복지재단 임원, 통리원 사회부장,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밀교신문 편집인, 제12, 13대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제15대 종의회 의원이다.

한편 이사회는 한상권 심인고등학교 교감을 교장 자격(인정)연수 대상자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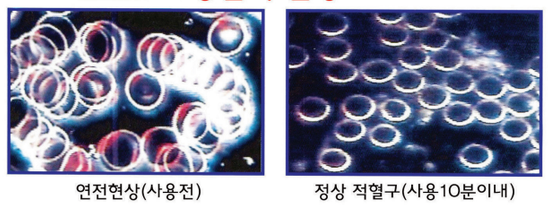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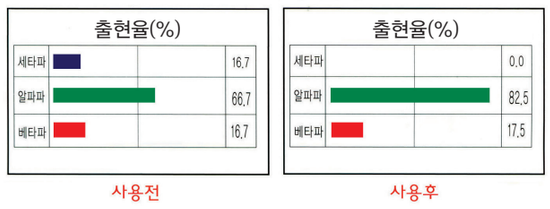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리 쥐나는 것, 목, 어깨, 허리통증, 무릎관절 등은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자연치유되어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항균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가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